

방사능방재법상의 검사와 관련된 벌칙 에 관한 검토

2020. 12.

형상철

목 차

- 1 도입
- 2 방호검사와 방재검사의 규정
- 3 방호검사와 방재검사의 수행방법
- 4 방호검사와 방재검사에 관한 벌칙
- 5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
- 6 결론

- ◆ 검사결과 시정명령은 원자력사업자에게 부담 : 신중한 접근 필요
 - ◆ 원자력사업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 - 방사능방재법 제1조 :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,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.....
 - 방사능방재법 제49조
 - 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3. 제12조제1항*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
- * 제12조제1항(방호검사) , 제38조제1항(방재검사)

=> 방호검사와 방재검사의 차이는?

제12조 : 방호검사

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- ⇒ 원자력사업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, 받지 않으면 처벌
- ⇒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?

공무원의제조항 ? 공무집행방해? 업무방해

형법

제136조(공무집행방해)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14조(업무방해) ① 제313조의 방법*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허위사실 유포나 위계

제38조 : 방재검사

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.

=> 검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처벌

=> 원자력사업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음

=> 원자력사업자가 검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가?

제12조 : 방호검사

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- 원자력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해야 하는가?
 - ✓ 최초검사, 운반검사 : 사업자가 신청
 - ✓ 특별검사, 정기검사 : 검사기관이 통보

방사능방재법 시행령

제18조(검사)

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해당 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제2호(정기검사) 또는 제4호(특별검사)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·검사일정·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8조 : 방재검사

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.

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

제22조(검사)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, 검사일정,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원자력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가?
 - ✓ 사용전 검사 : 사업자가 신청
 - ✓ 특별검사, 정기검사 : 검사기관이 통보

검사수행 방식

검사신청 vs 검사계획 통보 : 무의미

방재검사와 방호검사에 관한 문구의 차이가 아니라

최초검사, 사용전 검사 등 종류별 특성을 고려

벌칙을 동일

제12조(방호검사) : 원자력사업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

_____ =

제38조(방재검사) :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를 할 수 있다

행정주체의 권한 = 행정객체의 의무

⇒ 벌칙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

원자력안전법

제11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

3. 제16조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2조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37조제1항·제47조제1항·제56조제1항·제65조제1항·제75조제1항·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

⇒ 제98조(방사능방재법 제44조에 해당) 검사의 경우에만 거부, 방해, 기피 등을 처벌

위탁여부의 차이

- 위탁된 검사 : 12조(방호검사), 38조(방재검사), 원자력안전법 검사
=>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
- 위탁되지 않은 검사 : 방사능방재법 제44조, 원자력안전법 제98조
=> 검사를 거부, 방해, 기피, 거짓 진술한 경우에 처벌

* **위탁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검사가 중대하다는 의미**

=> 시급성 때문에 출입, 시료채취 등의 권리 제한을 감내할 것을 요구,
거부, 방해, 기피한 경우에도 처벌

5.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대한 처벌

- 방사능방재법 제49조

- 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제12조제1항*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**거짓으로 진술한 자**

- 헌법 제12조 제2항

- ✓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

=> 거짓진술에 형벌부과는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에 위반?

5.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대한 처벌

- 형법
 - ✓ 제152조(위증, 모해위증) ⊖ **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**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✓ 제154조(허위의 감정, 통역, 번역) **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,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** 허위의 감정,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.
- 국회에서의 증언, 감정 등에 관한 법률
 - ✓ 제14조(위증 등의 죄) ⊖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(서면답변을 포함한다)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5.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 대한 처벌

- 국세기본법

- ✓ 제88조(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)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·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**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·징수한다.

-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

- ✓ 제35조(과태료) ⊖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**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<p>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3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</p>	<p>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3. 제12조제1항, 제38조제1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</p>

감사합니다

Q&A